

식품 또는 첨가물의 자가기준 및 규격검사기준

(1990. 5.11)

제 1 조(목적) 이 기준은 식품위생법 시행 규칙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 위생기관이 식품 또는 첨가물의 자가기준 및 규격에 관한 검사업무를 행함에 있어 지켜야 할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(자가기준 및 규격검사 인정대상 제품의 범위) 이 검사기준의 적용을 받는 제품의 범위는 식품위생법 제7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식품에 용한다. 따라서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 또는 첨가물 공전에서 공정규격으로 품목별 기준 및 규격을 정하고 있는 품목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서 위생 및 품질 관리를 위한 일부기준 및 규격항목을 삭제, 완화, 변경등을 위한 자가기준 및 규격을 인정하여서는 아니된다.

제 3 조(검토의뢰서 제출시의 유의사항)

- ① 식품 또는 첨가물의 자가기준 및 규격을 인정받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자가기준 및 규격 검토의뢰서(이하 "검토의뢰서"라 한다) 3부(국립보건원, 2부)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.
- ② 검토의뢰서의 기재내용과 첨부자료는 합리성과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. 이때에 외국의 자료를 첨부하는 때에는 번역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
- ③ 수입품일 경우에는 수출국명, 제조업소명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.
- ④ 이미 검토승인을 받은 기준 및 규격을

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가기준 및 규격 원본(또는 사본)과 변경내용에 관한 전후대비표를 작성,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주소, 상호등 기술적인 검사사항이 아닌 것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 4 조(검토의뢰서의 작성) ① 검토의뢰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용어, 단위, 형식 등은 원칙적으로 식품공전 또는 식품첨가물공전을 준용한다.

② 검토의뢰서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작성한다.

1. 제품명

- 1) 가급적 원료물질과 관련되는 제품의 특성과 목적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.
- 2) 수입품에 있어서는 제품의 포장에 표시된 명칭을 기재한다.

2. 원재료 또는 성분배합비율(%)

- 1) 완성제품에 함유되는 물질의 성분 배합비율(%)를 기재한다. 다만, 제품의 특성상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원재료 함량(%)으로 기재할 수 있다.
- 2) 식품공전 또는 식품첨가물공전에 수재된 물질은 원칙적으로 그 명칭을 기재하여야 한다.
- 3) 식품공전에 수재되지 아니한 것과 통상적으로 식용화되지 아니하는 물질은 사용에 관한 근거 또는 기원을 기재한다.

- 4) 식품의 원재료 또는 성분배합비율을 구성하는 물질이 생약재등과 같은 동·식물원료를 사용하는 때에는 별도의 조치가 있을 때까지 다음의 원칙에 따라 검토 처리한다.
- (1)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제3호의 별표 1에서 정하는 동식물 원료
- ① 식품원료로서의 사용이 유보되는 것(13종)
 - [고삼, 도인, 동충하초, 목향, 여정실, 유백피, 음양과, 차전자, 천마, 토룡용, 행인, 향부자, 홍화]
 - ②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자가기준 및 규격검사 인정을 받아 사용할 수 있는 것(22종)
 - [구약과근, 구판, 노루귀, 녹각, 녹용, 달개비, 당귀, 백봉령, 복분자, 사상자, 사인, 산사자, 삼백초, 삽주뿌리, 석창포, 숙지황, 알로에(외피포함), 원지, 천궁, 측백엽, 토사자, 하수오]
 - ③ 자가기준 및 규격검사를 받지 아니하여도 사용할 수 있는 것(18종)
 - [감초, 갈근, 결명자, 구약(잎 또는 괴근에서 전분이나 다당류만 분리한 것), 덩굴초, 두충, 박하, 산약(마), 삽주잎, 상백피, 알로에(외피포함하지 않는 것), 오가피, 오미자, 오매(매실), 영지, 차전자껍질, 화분]
- (2)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기타 동·식물원료
- ① 대한약전 또는 대한약전외 한약(생약) 규격집에 수록된 원료인 경우 일상 식생활 관습상 널리 사용하는 것
 - ②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국립보건원장이 안정성과 전전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.
- (3) 원재료 또는 성분배합비율조성 원칙
- ① 통상 식용으로 널리 사용하지 않는 동·식물원료는 가급적 물가용성성분(엑기스)으로서 최소량으로 사용토록 한다.
- ② 약리작용과 효과가 명확한 생약재류는 식품원료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- 5) 식품첨가물로서 다음의 공정서에 수재되지 아니한 것인 때에는 안전성에 관한 입증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.(다만, 화학적성품인 첨가물은 보사부장관이 지정한다.)
- 미국 Food chemical codex
 - FAO/WHO 식품첨가물규격
 - 일본위생시험법 주해
 - 일본첨가물 공정서
 - EEC규격
 - 기타 공인 할 수 있는 문현
- ### 3. 제조방법
- 1) 과학적인 타당성과 합리성을 가지 고 위생적이어야 한다.
 - 2) 당해 제품의 객관적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원료처리과정에서부터 중간제조과정과 완제품이 포장되기까지의 주요 제조방법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.
- ### 4. 성분규격
- 1) 당해식품의 특성, 용도, 표시, 광고 사항 등을 고려하여 일반성분, 무기물, 비타민류, 미생물, 중금속, 첨가물 및 특정성분에 대한 자가 품질관리 항목을 설정한다.
 - 2) 자가품질관리를 위한 성분규격 항목을 설정함에 있어서는 가능한 식품공전을 준용한다.
 - 3) 성분규격중 일반성분, 중금속등의 함량기준은 다음의 범위내에서 설정함을 원칙으로 한다.

| 성분함량(%, mg%, IU/100등) | 허용한도 |
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
| 30이상 | 10%(+ 또는 -) |
| 10이상-30미만 | 20%(+ 또는 -) |
| 10이상-10미만 | 30%(+ 또는 -) |

○ 허용한도를 적용함에 있어 수분, 회분등과 같이 상한선(이하 또는 미만)을 규정한 것은 + %를 적용하고, 조단백질등과 같이 하한선(이상)을 규정한 것은 - %를 적용한다. 다만, 식용유의 비중등과 같이 하한치 내지 상한치(0.916-0.922)를 설정한 것은 위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또한 수분등과 같이 보존과정에서 차이에 발생할 수 있는 품목인 경우에는 위의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다.

○ 최저기준(1.0미만)이하의 미량성분에 있어서는 그 특수성을 고려하여 위의 표의 규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.

○ 성분함량의 수치는 반올림하여 표기한다.

4) 자가기준 및 규격검토 검사대상 제품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주요 성분규격의 설정은 다음에 의한다. 다만, 당해 제품

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때에는 일부항목을 가감조정할 수 있다.

(1) 식품

| 항 목 | 규 격 |
|---|--|
| ① 성상 | 제품의 색상, 냄새 형상등을 기재한다. |
| ② 당류 | 수분, 당도(.....당으로서) |
| 성 분 분 합 량 | 유가공품 식품공전중 유가공품의 성분규격을 준용하여 설정한다. |
| 두부류 | 수분, 회분, 조단백질, 중금속 |
| 식용유 | 식품공전중 식용유지의 성분규격을 준용하여 설정한다. |
| 인스탄트면류 | 수분, 조단백질 |
| 건강보조식품 | 건강보조와 관련되는 일반성분과 특수성분등을 설정한다. |
| 특수영양식품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특수영양과 관련되는 일반성분과 제품의 특성이 인정될 수 있는 특수성분등을 설정한다. ○ 무기성분과 비타민류를 첨가하였을 경우에는 철, 비타민(A, B₁, B₂, C)을 설정한다. |
| 인삼제품 | 식품공전중 인삼제품 또는 유사식품의 성분규격을 준용하여 설정한다. |
| 식품가공업 해당제품 중 기타식품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식품공전의 성분규격을 준용하여 설정한다. ○ 제품의 특성에 따라 성분규격을 설정한다. |
|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3호 별표1에서 정하는 등 · 식물을 원료로 하 는 식품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식품공전의 성분규격을 준용하여 설정한다. ○ 원료의 특성에 따라 관리의 필요성이 있는 항목을 설정한다. |
| 수입식품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식품공전 또는 해당국의 성분규격을 준용해서 설정한다. ○ 업종, 용법, 표시, 광고등 그 식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반성분과 특정성분등을 설정한다. |

| 항 목 | 규격 |
|--------------------|---|
|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향신료, 난류, 코코아등의 식품은 다음에서 정하는 사항을 설정토록 한다.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향신료 : 수분, 회분, 타르색소, 위화물 - 난류 : 수분, 회분, 조단백질, 대장균군, 살모넬라균 - 코코아 : 수분, 회분, 조지방, 대장균군 - 대두단백 : 수분, 회분, 조단백질, 대장균 - 코코낫 : 수분, 조지방, 대장균군 - 효모식품 : 수분, 회분, 조단백질, 대장균군 - 조미식품 : 수분, 회분, 조단백질, 대장균군 |
| (3) 중금속(mg/kg) | 10이하(다만, 당류는 5이하) |
| (4) 이물시험 | 적합하여야 한다. |
| (5) 첨 가 물 | 보존료 산화방지제 인공감미료 타르색소 식품첨가물 공전에서 사용기준이 정하여진 식품은 그 사용기준에 따라 설정한다. |
| (6) 기타항목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제품의 특성이 인정될 때에는 그에 따른 특정성분규격을 설정할 수 있다. ○ 중금속항의 설정은 선택적으로 할 수 있다. ○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때에는 오염물질등의 규격을 설정할 수 있다. ○ 성분규격은 식품의 개별특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. |

(2) 식품첨가물

가) 함량

○ 유효성분의 함량을 백분율(%)로 표시하고 ()안에 분자식 및 분자량을 기재한다. 또한 유효성분이 2종 이상일 때는 가능한한 각각에 대하여 설정한다. 다만, 함량을 백분율(%)로 표시하기가 곤란하거나 순물질로 직접 표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단위, 역가, 색가 또는 그 양에 대응하는 분해물질(예: 총질소, 조단백질 또는 ○○화합물) 등으로 기재할 수 있다.

○ 유효성분의 함량, 단위, 역가 또는 색가 등의 기준은 공인된 근거자료가 없는 한 표시량으로 기준할 때 다음에 적합하여야 하나, 제품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근거자료에 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
다만, 함량시험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확인시험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.

○ 비타민류 : 99% 이상(제제일때에는 90-130%)

○ 효소류 : 90-130%

○ 천연색소류 : 100% 이상(제제일때에는 90% 이상)

○ 기타 : 100% 이상(제제일때에는 90-130% 이상)

나) 성상

제품의 성질을 참고할 수 있도록 색상, 냄새, 형상등을 기재한다.

다) 확인시험

주로 화학적시험으로서 확인하려는 성분이 2종이상일 때에는 중요성분부터 순차적으로 기재한다. 또한, 자외부, 가사부 및 적외부흡수스펙트럼측정법 크로마토그라프법 등을 기재할 수 있다.

라) 순도시험

제품의 원료 및 제조과정에서 혼입이 예상되는 불순물 또는 분해생성물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다.

마) 제품의 품질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건조감량, 수분, 감열잔류물, 회분, 정량법, 잔류용매, 대장균군 및 살모넬라균등을 설정하여야 한다.

5. 용도, 용법, 사용량

- 1) 식품에 있어서는 용도, 사용방법, 사용량등을 기재한다(다만, 보편적인 식품은 제외할 수 있다)
- 2) 식품첨가물에 있어서는 식품 제조가공상의 사용목적, 대상식품, 사용방법, 사용량등을 기재한다.

6. 포장단위

- 1) 유통제품의 포장단위를 기재한다.
- 2) 수입품에 있어서는 수입 및 유통제품의 포장단위를 기재한다.

7. 보존기준

당해제품을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하여 특수한 조건이 필요한 경우에는 온도, 습도, 광선, 포장등의 조건을 기재한다.

8. 유통기한

- 1) 당해식품의 제조일자를 기준으로하여 설정한다.
- 2) 식품공전에서 권장유통기준이 정하여져 있는 식품과 유사한 제품은 가급적 식품공전에서 정한 유통기한의 범위내에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.
- 3) 식품첨가물에 있어서는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되는 유통제품을 대상으로 설정한다.

9. 표시기준

- 1) 식품위생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2와 식품공전의 표시기준에서 정한 사항이외의 것을 기재한다.
- 2) 당해제품의 특성상 특별한 표시기준을 제정할 필요성이 있는 제품의 경우 그 내용을 기재한다.

10. 시험방법

- 1) 시험방법은 성분규격 항목의 순서에 따라 정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한다.
- 2) 식품공전, 식품첨가물공전, 이 기준 제4조제2항제2호의 4)에서 정하는 공정서와 국립보건원장이 예규로 정한 식품·첨가물규격기준 및 시험방법집에 준하여 시험이 가능할 경우 그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.
(예 1) 식품공전(또는 식품첨가물공전)에 준하여 시험한다.
- 3) 식품·첨가물규격기준 및 시험방법집(국립보건원 예규 제280호)에 준하여 시험한다.
- 4) 이 품목 Xg을 취하여(전처리 조작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기재) 식품첨가물공전 제3일반시험법의 비소에 따라 시험한다.
- 5) 공전에 수재되지 않은 시약, 시액, 기구, 기기 및 상용표준품을 사용하였을 때는 원칙적으로 시약, 시액은 순도, 농도 및 그 조제방법을 기구는 크기, 폭등의 형태를 도시하고 그 사용방법을 상용표준품은 규격을 기재하여야 한다.

제5조(첨부자료) 식품 또는 첨가물의 자가기준 및 규격의 검사승인을 받기 위하여 식품위생검사기관에 검토의뢰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.

1. 식품

- 1) 국내 또는 외국의 공인식품위생검사기관의 성분규격 분석성적서
- 2) 수입품인 경우에는 위의 성분규격 분석성적서와 제조업소의 원재료 또는 성분배합비율, 제조방법등

2. 첨가물

- 1) 당해제품 제조업소의 자가시험성적

- 서 또는 공인식품위생검사기관의 시험성적서
- 2) 수입품을 원료로하여 혼합, 희석한 제제일 경우에는 그 원료에 대한 자가기준 및 규격사본
 - 3) 수입품인 경우에는 제조업소의 원재료 또는 성분배합비율, 제조방법, 용도, 사용량 및 보존기준
 - 4) 원재료 또는 성분배합비율 구성을 질이 공전에 수재되지 아니한 것인 경우의 성분규격 및 안전성에 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.(제4조제2항제2호의4)에서 정하는 공정서와 국립보건원 예규로서 정한 식품·첨가물 규격기준 및 시험방법집에 수재된것은 제외한다.
 - (1) 명칭 : (일반명칭 또는 화학명칭)
 - (2) 화학구조 : 화학구조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화학식 또는 화학적 조성등과 같은 화학적 본질을 분명하게 기재하여야 한다.
 - (3) 제조방법 : 당해제품의 객관적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원료처리과정에서부터 중간제조과정과 완제품이 포장되기까지의 주요 제조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기재한다.
 - (4) 이화학적성질 및 순도 : 확인시험, 불순물의 종류, 양 및 그 시험법 함량 및 정량법
 - (5) 사용목적, 사용방법 및 효과
 - (6) 독성시험
 - (7) 경시변화등 안정성시험
- 제6조(검토의뢰서의 보완, 시정 및 반송 등) ①식품위생검사기관은 검토의뢰서의 기재내용이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완, 시정 또는 반송할 수 있다.
1. 보완
 - 1) 원재료 또는 성분 배합비율이 분명 하지 아니하거나 맞지 아니할 때
 - 2) 제조방법이 바위생적이거나 불합리한 때
 - 3) 성분규격 및 시험방법중 필요한 항목이 누락되어 있거나 불합리한 때
 - 4) 자가기준 및 규격변경시 이미 검토승인을 받은 원본(또는 사본)을 첨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변경하고자하는 사항에 대한 대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불합리한 때
 - 5) 용도, 목적등이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때

2. 시정

- 1) 용어, 기호 또는 일반적인 기재내용이 식품공전 또는 식품첨가물 공전에 준하지 아니하였을 때
- 2) 내용상 단순한 탈자나 오자등이 있을 때
- 3) 성분명칭이 식품공전 또는 식품첨가물 공전의 명칭이나 첨부자료와 상이하게 기재되었을 때
- 4) 성상이 의뢰검체와 상이할 때
- 5) 품질관리에 필요한 기준 및 규격이 아닌것으로 인정된 때
- 6) 위 각호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검사결과 경미한 사항으로 인정될 때

- ①검토의뢰서의 기재내용이 전항 제1호에 해당할때의 보완기간은 30일로 한다. 만약 동기간까지 보완되지 아니할때의 그독촉기간은 7일로 한다.
- ②자가기준 및 규격검토 신청내용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송한다.

- 1)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조에 규정하는 자가품질기준 및 규격검토 대상업종의 품목이 아니거나 본 기준에서 정하는 제반사항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

- 2) 가공식품으로서의 특성이나 가치성, 건전성이 없다고 판단되거나, 안전성 및 건전성등이 미확인 또는 결여되어 인체 위해가 우려되는 때,
- 3) 식품 및 첨가물공전상 공정규격이 정하여진 특정의 식품 또는 첨가물과 유사하여 그 품질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을 때,
- 4) 신청 자가기준 및 규격검토대상품 목이 그 용도, 용법등이나 특성등으로 보아 식품위생법령에서 정하는 업종과 서로 맞지 아니한 때,
- 5) 보완 또는 독촉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내에 보완치 아니하거나 보완내용이 불충분하여 검토가 불가능한때

제 7 조(보착) ①이 고시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식품 또는 첨가물에 대한 검토의뢰서의 검사는 전 각조의 규정에 따른다.
②검토의뢰서를 처리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제5조의 첨부자료 이외에도 관계문헌, 상용표준품, 제품에 사용된 원료 성분, 시험에 필요한 특수시약, 기구, 균주배지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③검토의뢰서를 처리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.

1. 근거로 첨부한 국내외 공인식품위생검사기관의 성적내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거나 필요한 검사항목이 누락되어 있을때(제 5조제 2호의2)를 포함한다)
2. 보완 또는 시정사항에 대하여 성분규격분석이 필요한 때
3. 식품공전의 성분규격과 상이한 화학물질 또는 오염미생물의 규격을 설정하고 자할 때

제 8 조(자가기준 및 규격인정 현황취합보고) 국립보건원장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위생검사기관(국립보건원을 포함한다)의 검사를 거쳐서 인정한 자가기준 및 규격현황을 취합하여 매분기 종료후 20일이내에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부 칙

- ①(시행일) 이 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- ②(경과조치) 이 기준고시이전에 식품위생검사 기관으로부터 자가기준 및 규격검사승인을 받아 수입 또는 협상을 받은 식품 또는 첨가물이 이 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1990.12.31까지 해당 식품위생검사기관으로부터 자가기준 및 규격의 변경검사를 받아야 한다.

(별지 제1호 서식)

| | | | | |
|--|-----|-----|--------|------|
| 식 품 첨가물 | | | | 처리기간 |
| 자가기준 및 규격(신규, 변경)검토의뢰서 | | | | 일 |
| 의뢰인 | ①성명 | | 주민등록번호 | |
| | ②주소 | | 전화 | |
| 제조자 | ③성명 | | | |
| | ④주소 | | | |
| ⑤제품명 | | ⑥업종 | | |
| ⑦원재료 또는 성분 배합 비율 (%) | 별첨 | | | |
| ⑧제조방법 | 별첨 | | | |
| ⑨성분규격 | 별첨 | | | |
| ⑩용도·용법·사용량 | 별첨 | | | |
| ⑪포장단위 | 별첨 | | | |
| ⑫보존기준 | 별첨 | | | |
| ⑬표시기준 | 별첨 | | | |
| ⑭유통기한 | 별첨 | | | |
| ⑮시험방법 | 별첨 | | | |
| 위와 같이 자가기준 및 규격의 검토를 받고자 의뢰합니다. | | | | |
| 년 월 일 | | | | |
| 의뢰인 | | | | ⑯ |
| 귀하 | | | | |
| 구비서류 1. 검토의뢰서 3부 2. 검체 3. 검토에 필요한 자료(외국의 자료는 원문과 번역문) | | | | |
| 기재상 주의사항 1. 의뢰인 및 제조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(1), (4)란에 법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한다. 2. (6)업종은 의뢰제품이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의1. 식품제조가공업의 가 내지 커 및 2. 첨가물로 구분한 해당 영업의 종류를 기재한다. | | | | 수수료 |